



바닥 해체작업 중 벽이 쓰러지며 깔림



건물보수공사 지하 1층 현장에서 바닥의 미장면(콘크리트)을 전동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인접한 두께 11cm의 조적벽체(길이×높이, 217cm×202cm)가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쓰러지면서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깔려 사망



발생 원인

- 조적벽체의 전도방지조치 없이 바닥 해체작업 실시
 - 바닥 미장면 위에 부실하게 세워진 조적벽체를 전도방지 조치 없이 미장바닥 해체작업을 실시
-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
 - 구조체가 아닌 바닥미장 위에 조적벽체가 시공되어 전도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나,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

T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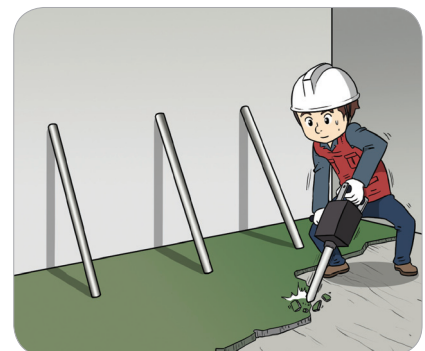
안전작업

1 조적벽체의 전도방지조치 후 작업

- 바닥을 해체하기 전에 바닥미장 위에 부실하게 세워진 벽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버팀대로 지지한 후 바닥 해체 작업 실시

2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

- 바닥미장 해체 전에 조적벽체의 구조 및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 해체 작업 시 벽체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 실시



벽체에 지지대를 설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(전도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(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)





바닥 해체작업 중 벽이 쓰러지며 깔림

건물해체작업 시 주변 구조물의 붕괴·전도위험에 대비하세요!

